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6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이광희·채현일·김문수

허성무 · 오세희 · 모경종

서미화 • 박지원 • 김승원

양문석 · 임미애 · 민병덕

김영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군·구의 청사는 그 대상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청사는 제외한다.

6의5. 참여 예상 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			
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 청사. 다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u>청사는 제외한다.</u>		
<u><신 설></u>	6의5. 참여 예상 인원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u>지역축제</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